여수웅천지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건축과 – 15295 (2008. 05. 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 3–1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12~15층 9개동 총 482세대(특별공급 48세대 및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13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면적단위 : ㎡, 단위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별계약면적						대지지분	해당동 (호수)	층수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면적					대지비	건축비	계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전용	주거공용	소계											계약시	2008.09.10	2008.12.10	2009.03.10	2009.07.10	2009.11.10	2010.03.10	입주시
민영 주택	21937 –01	2008000510 (01)	83.325	59.911	23.414	83.325	1.825	19.198	104.348	36.945	305, 306동	1층	6	17,707	113,293	131,000	13,000	13,100	13,100	13,100	13,100	13,100	13,100	39,400
												2층	6	17,707	116,293	134,000	13,000	13,400	13,400	13,400	13,400	13,400	13,400	40,600
												3~4층	12	17,707	118,293	136,000	13,000	13,600	13,600	13,600	13,600	13,600	13,600	41,400
												5~15층	66	17,707	121,293	139,000	13,000	13,900	13,900	13,900	13,900	13,900	13,900	42,600
	21937 –02	2008000510 (02)	114.128	84.935	29.193	114.128	2.588	27.217	143.933	52.376	301, 304동 (1,4호) 302, 303동 (4호) 307동	1층	6	25,103	159,897	185,000	18,000	18,500	18,500	18,500	18,500	18,500	18,500	56,000
												2층	10	25,103	163,897	189,000	18,000	18,900	18,900	18,900	18,900	18,900	18,900	57,600
												3~4층	20	25,103	166,897	192,000	19,0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57,800
												5~15층	98	25,103	171,897	197,000	19,000	19,700	19,700	19,700	19,700	19,700	19,700	59,800
											302, 303동 (1호) 308동, 309동	1층	10	25,103	155,897	181,000	18,000	18,100	18,100	18,100	18,100	18,100	18,100	54,400
												2층	10	25,103	159,897	185,000	18,000	18,500	18,500	18,500	18,500	18,500	18,500	56,000
												3~4층	20	25,103	162,897	188,000	18,000	18,800	18,800	18,800	18,800	18,800	18,800	57,200
												5~15층	98	25,103	167,897	193,000	19,000	19,300	19,300	19,300	19,300	19,300	19,300	58,200
	21937 –03	2008000510 (03)	114.877	84.960	29.917	114.877	2.588	27.226	144.691	52.391	301, 304동 (2,3호) 302, 303동 (3호)	1층	6	25,111	159,889	185,000	18,000	18,500	18,500	18,500	18,500	18,500	18,500	56,000
												2층	6	25,111	163,889	189,000	18,000	18,900	18,900	18,900	18,900	18,900	18,900	57,600
												3~4층	12	25,111	166,889	192,000	19,0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19,200	57,800
												5~15층	66	25,111	171,889	197,000	19,000	19,700	19,700	19,700	19,700	19,700	19,700	59,800
											302, 303동 (2호)	1층	2	25,111	155,889	181,000	18,000	18,100	18,100	18,100	18,100	18,100	18,100	54,400
												2층	2	25,111	159,889	185,000	18,000	18,500	18,500	18,500	18,500	18,500	18,500	56,000
												3~4층	4	25,111	162,889	188,000	18,000	18,800	18,800	18,800	18,800	18,800	18,800	57,200
												5~15층	22	25,111	167,889	193,000	19,000	19,300	19,300	19,300	19,300	19,300	19,300	58,200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건축과 – 15295 (2008. 05. 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 3–2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12~15층 11개동 총 602세대(특별공급 60세대 및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16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면적단위 : ㎡, 단위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별계약면적						대지지분	해당동 (호수)	층수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면적					대지비	건축비	계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전용	주거공용	소계											계약시	2008.09.10	2008.12.10	2009.03.10	2009.07.10	2009.11.10	2010.03.10	입주시
민영 주택	21938 –01	2008000511 (01)	83.326	59.911	23.415	83.326	1.456	19.261	104.043	36.536	317동	1층	2	18,315	114,685	133,000	13,000	13,300	13,300	13,300	13,300	13,300	13,300	40,200
												2층	2	18,315	117,685	136,000	13,000	13,600	13,600	13,600	13,600	13,600	13,600	41,400
												3~4층	4	18,315	119,685	138,000	13,000	13,800	13,800	13,800	13,800	13,800	13,800	42,200
												5~15층	22	18,315	122,685	141,000	14,000	14,100	14,100	14,100	14,100	14,100	14,100	42,400
											318동 (1,2호)	1층	2	18,315	112,685	131,000	13,000	13,100	13,100	13,100	13,100	13,100	13,100	39,400
												2층	2	18,315	115,685	134,000	13,000	13,400	13,400	13,400	13,400	13,400	13,400	40,600
												3~4층	4	18,315	117,685	136,000	13,000	13,600	13,600	13,600	13,600	13,600	13,600	41,400
												5~15층	22	18,315	120,685	139,000	13,000	13,900	13,900	13,900	13,900	13,900	13,900	42,600
	21938 –02	2008000511 (02)	114.398	84.935	29.463	114.398	2.063	27.306	143.767	51.797	311, 314동 (1,4호) 312, 313동 (1호) 319동	1층	6	25,965	159,535	185,500	18,000	18,550	18,550	18,550	18,550	18,550	18,550	56,200
												2층	10	25,965	163,535	189,500	18,000	18,950	18,950	18,950	18,950	18,950	18,950	57,800
												3~4층	20	25,965	166,535	192,500	19,000	19,250	19,250	19,250	19,250	19,250	19,250	58,000
												5~15층	98	25,965	171,535	197,500	19,000	19,750	19,750	19,750	19,750	19,750	19,750	60,000
											312, 313동 (4호) 315, 316동 (1,4호) 318동 (3,4호) 320동, 321동	1층	16	25,965	155,535	181,500	18,000	18,150	18,150	18,150	18,150	18,150	18,150	54,600
												2층	16	25,965	159,535	185,500	18,000	18,550	18,550	18,550	18,550	18,550	18,550	56,200
												3~4층	32	25,965	162,535	188,500	18,000	18,850	18,850	18,850	18,850	18,850	18,850	57,400
												5~15층	164	25,965	167,535	193,500	19,000	19,350	19,350	19,350	19,350	19,350	19,350	58,400
	21938 –03	2008000511 (03)	115.146	84.960	30.186	115.146	2.064	27.314	144.524	51.812	311, 314동 (2,3호) 312,313동 (2호)	1층	6	25,973	159,527	185,500	18,000	18,550	18,550	18,550	18,550	18,550	18,550	56,200
												2층	6	25,973	163,527	189,500	18,000	18,950	18,950	18,950	18,950	18,950	18,950	57,800
												3~4층	12	25,973	166,527	192,500	19,000	19,250	19,250	19,250	19,250	19,250	19,250	58,000
												5~15층	66	25,973	171,527	197,500	19,000	19,750	19,750	19,750	19,750	19,750	19,750	60,000
											312, 313동 (3호) 315, 316동 (2,3호)	1층	6	25,973	155,527	181,500	18,000	18,150	18,150	18,150	18,150	18,150	18,150	54,600
												2층	6	25,973	159,527	185,500	18,000	18,550	18,550	18,550	18,550	18,550	18,550	56,200
												3~4층	12	25,973	162,527	188,500	18,000	18,850	18,850	18,850	18,850	18,850	18,850	57,400
												5~15층	66	25,973	167,527	193,500	19,000	19,350	19,350	19,350	19,350	19,350	19,350	58,400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반사항 등 본인의 청약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본 아파트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재당첨 제한).

※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 1년으로 단축하여 금년 6월중 시행예정으로 국토해양부가 4월 25일 입법예고 하였고 시행일 이전 분양계약체결 주택도 완화규정이 적용될 예정임.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마이너스 옵션제 적용주택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4항, 제18조 1항에 의거 본 공동주택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가점제 및 추첨제"를 병행 실시함.

※ 웅천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 학교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은 여수시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사업주체에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조망권별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각 주택형별 공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면적임.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 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층, 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음.
- 주택가격(분양대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입주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측량 및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잔금에서 증감에 따른 정산예정임.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은행최초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상기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주택소유, 당첨사실관련 등 부적격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당첨계좌 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마이너스 옵션관련 동별순서를 별도로 배정하지 아니하며, 마이너스옵션 시공으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

(vat포함, 단위 : 원)

구분	주택형	확장공사비	비 고
3–1 블럭	83.325형	9,719,000	
	114.128형	12,367,000	
	114.877형	8,628,000	

구분	주택형	확장공사비	비 고
3–2 블럭	83.326형	9,719,000	
	114.398형	12,367,000	
	115.146형	8,628,000	

- 발코니 확장비용은 주택 공급가격과 별도이며, 확장시 확장비용은 미확장세대의 기본품목을 감한 가격임.(※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이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상기 비용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선택은 바닥, 벽, 천장 등의 연결공사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선택자는 선택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마감재는 사업주체가 정하여 제시하는 품목을 마이너스 옵션으로 신청하여 설치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구분	주택형	확장공사비	비 고
3–1 블럭	83.325형	14,286,000	
	114.128형	19,550,000	
	114.877형	19,678,000	

구분	주택형	확장공사비	비 고
3–2 블럭	83.326형	14,286,000	
	114.398형	19,596,000	
	115.146형	19,724,000	

※ 상기 금액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88호에 의거 주택공급 면적에 따른 지상층건축비의 15%로 책정된 금액임.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3–1 블럭 및 3–2 블럭 공통사항)

품목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비 고
창호	창호	1. 목문 – 목문틀(가틀포함) 및 문짝일체(하드웨어포함) – 창호주위 사춤, 각종 하부씰	1. 발코니 PVC창호 및 현관방화문 (공통) (하드웨어 및 하부씰 포함) 2. 소방관련 방화문 (114.128형/114.398형) (하드웨어 및 하부씰 포함) 3. 차후 문틀설치부위는 견출마감 (조적조–초벌미장)	
바닥재	거실, 침실, 주방	1. 거실, 주방 및 침실 바닥마감 (온돌마루 및 룸) 2. 1번 바닥재에 해당하는 걸레받이 3. 재료분리대	1. 바닥난방 및 바닥미장	
	현관	1. 현관 디딤판 2. 현관 바닥타일	1. 거실바닥 & 신발장 단차부위 초벌미장처리 2. 현관바닥 CON'C면 노출	
	발코니	없음	1. 액체방수+보호몰탈+타일(각종 하부씰)	
벽	거실, 침실, 주방	1. 벽지(초배지 포함)	1. 콘크리트 면 : 콘크리트 면처리 2. 조적부 : 시멘트 몰탈바르기 3. 외기에 면하는 부위 : 단열재+석고보드(9.5T) 4. 주방가구 부위 : 콘크리트 면처리 5. 주방벽타일 부위 : 콘크리트 면처리 6. 거실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	
	벽판넬(아트월포함)	1. 인테리어 벽체 마감 일체 : 아트월, 벽판넬, 장식벽 (투각창 등)	1. 모체 바탕공사 : 거푸집 조인트면 콘크리트 면처리 시공	
	발코니	없음	1. 콘크리트 면처리 + 수성페인트 2. 단열필요 구간은 단열재+석고보드(9.5T) + 조인트 처리 + 수성페인트	
천정	천정	1. 천정지 (초배지포함) 2. 우물천정	1. 우물천정 부위 평천정 시공 : 천정틀 + 석고보드 9.5T＊1PLY 2. 천정시설물 마감 (스프링쿨러, 환기시스템 디퓨저, 감지기 등)	
	반자돌림(몰딩)	1. 몰딩	1. 벽, 천정 조인트 별도마감 없음	
욕실	바닥	1. 타일	1. 액체방수 위 바닥 바탕몰탈(부부욕실 판넬히팅 포함)	
	벽체	1. 타일 2. 욕조고임 벽돌	1. 콘크리트 면부위 : 액체방수(거친마감) 2. 조적부위 : 액체방수(거친마감) (방수미시공부위) : 초벌미장	
	천정	1. 천정재 (천정틀공사 포함) 2. 욕실휀 3. 천정점검구 4. 조명기구 일체	1. 전기배선 및 설비관통 슬리브 처리	
	인테리어	1. 대리석상판, 욕실거울, 욕실장, 샤워부스(114.128형/114.877형/114.398형/115.146형), 액세서리 등	–	
	위생기구	1. 위생기구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육가(트렌치)), 욕조 등	1. 설비배관(매립배관, 단부보호처리)	
주방	주방가구	1. 주방가구일체(상판포함) 2. 수납장식장 3. 보조주방가구 4. 액세서리 5. 후드 6. 자동식 소화기	1. 가스배관 2. 후드용 후렉시블 공사 3. 주방가구 설치위치 콘크리트 면처리 4. 주방가구 측면 경량칸막이 설치(견본주택기준)	
	주방기구	1. 주방기구 일체 : 가스오븐(쿡탑), 음식물탈수기	1. 설비배관 (매립배관, 단부보호처리)	
	벽타일	1. 주방상·하부장 사이 벽타일	1. 노출면 콘크리트 면처리	
	기타		1. 주방라디오 (입주시 지급품–설치는 계약자 설치함)	
조명기구	조명기구	1. 부착형 조명기구 : 복도 매입등을 제외한 일체	1. 전기배관, 배선 2. 스위치 및 콘센트 마감 3. 매입형 조명기구(복도 매입등) 4. 발코니 조명기구	
가구 및 기타사항	가구	1. 신발장/현관장 (경량칸막이, 헛보 포함) 2. 붙박이장 (경량칸막이, 헛보 포함) 3. 화장대 (114.128형/114.877형/114.398형/115.146형) 4. 드레스룸 도어장 (시스템선반포함–114.877형/115.146형)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유의사항

- 계약시 마이너스옵션 또는 기본형을 선택할 경우 변경이 불가하며, 마이너스 옵션을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세대는 발코니 미확장 기준으로 시공되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라 시공되지 않는 품목을 추후 설치하기 위한 사전 보강공사는 계약자의 임의시공으로 인한 내부시설물의 하자를 방지하고자 견본주택에 적용된 제품을 기준으로 시공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람.
-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함.
- 마이너스옵션 신청세대는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기본 선택품목 시공 및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그 밖의 건물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 거실, 침실, 주방 등의 바닥 마감재 미시공에 따른 바닥미장 레벨 기준은 거실(주방포함), 안방은 견본주택 바닥 마감재 기준으로 시공되며, 기타 침실은 장판지 마감기준 레벨로 시공됨.
- (보조)주방 상부장 설치시 도시가스 시공부위에 따라 내부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설비배관의 단부보호 처리는 아래와 같이 시공됨.
  - 1) 양변기 : 하부배수배관(PVC 100A) 30cm 노출 후 CAP 마감 2) 세면기 : 벽면 배수배관(PVC 35A) 5cm 노출 후 CAP 마감 3) 수전류 : 배관 후 CF 아답타에 PLUG 마감 4) 육가 : 슬리브 + F.D 마감
- 기타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부위의 마감기준
  - 1) 욕실 천정재 미설치에 따른 마감은 콘크리트 타설 마감임(콘크리트 면처리 미적용) 2) 욕실 벽체의 타일은 준공 후 입주자(계약자)가 떠붙이기 기준으로 시공 할 수 있도록 액체방수 노출(거친마감) 마감임
  - 3) 거실, 침실, 주방 등 몰딩 미설치에 따라 벽과 천정 조인트 부위는 별도 마감 없음. 4) 거실 등 인테리어 벽체마감(아트월,벽판넬 등) 및 벽지 미시공에 따른 콘크리트 마감은 거푸집의 조인트만을 콘크리트 면처리한 마감임.
  - 5) 문틀(가틀포함) 미시공에 따른 문틀주위 마구리면은 현장 콘크리트 타설 면 기준으로 시공됨. 6) 각종 하부씰(재료분리대) 미 시공에 따라 바닥마감 공사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7) 기타 미표기된 항목(경미한 변경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옵션시 제외 및 설치되는 품목은 평형별로 상이 할 수 있으니 모델하우스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3–1 블럭

구 분	83.325형	114.128형	114.877형	계
세대수	2	8	3	13

• 3–2 블럭

구 분	83.325형	114.398형	115.146형	계
세대수	1	10	5	16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5.28)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만 20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당첨된 사실(특별공급 당첨자 제외)이 있는 경우라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분양가 상한제 당첨여부는 청약신청시 금융결제원, 은행 등에서 사전확인 가능)
-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내를 특별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단,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계		100			
자녀수(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여수시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비 고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동점자 처리기준 :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람.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6. 1(일) [09 : 00 ~ 12 : 00], 당사 견본주택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6. 1(일) [14 : 00],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추첨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 인 신 청 시 (배우자 포함)	3자녀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	• 특별공급신청서(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무주택서약서(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배점기준표(접수 장소에 비치 및 각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피 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제 3 자 대리신청시 추 가 사 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5. 07. 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처리)

2) 기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한이 있는 자는 제외).
- 공급세대수 [총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이내]

• 3–1 블럭

구 분	83.325형	114.128형	114.877형	계
세대수	9	27	12	48

• 3–2 블럭

구 분	83.325형	114.398형	115.146형	계
세대수	6	36	18	60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배정에 참가하여 동,호수 배정을 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상기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구비서류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5.28)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납부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등),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주택공급신청용)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인정서 및 추천서만 인정(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 불가),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및 인정서 1통,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6. 1(일) [09 : 00 ~ 12 : 00], 당사 분양사무실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6. 1 (일) [14 : 00],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추첨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3)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5.28) 현재 여수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당 주택에 공급 신청할 수 없음.(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3조 제1항)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순 위	구 분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1순위	가점제 대상자	•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모집공고일 현재 여수시 거주자	2008. 6. 2.(월)	• 인터넷 : – 국민은행 www.kbstar.com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www.apt2you.com • KB모바일 : – Mbank, kbank, BankON • 시간 : 08:30~18:00	• 일시 : 2008. 6. 12.(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2008. 6. 12.(목) : 문화일보에 게재 예정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첨제 대상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청약 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공통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980. 8. 29 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 5. 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아래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참조)				
	1순위 청약제한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가점제대상자	• 2순위 청약자 전원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2008. 6. 3.(화)		
	추첨제대상자	• 해당사항 없음(별도 추첨제 신청자격 없음)				
	공통	• 1순위자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3순위	전주택형	•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8. 6. 4.(수)	• 외환은행 본•지점 • 시간 : 09:30 ~ 16:30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09:30 ~ 16:30]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약가점제 유의사항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 가점제 적용 및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아야 함.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 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여수웅천지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④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수마다 5점씩 감점(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60세 이상 직계존속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이나, 주택 소유에 따른 감점은 없음)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경과기간 및 요건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
- 면적변경 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면적 변경한 경우는 면적변경일)로부터 2년경과시 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면적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는 가입일(기 예치금액 변경한 자는 변경일)로부터 2년 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면적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면적만 신청 가능(단,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면적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 1994. 08. 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KB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WIPI폰 기종만 가능)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KB모바일	▶ SKT : MBank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 신청 ▶ KTF, LGT : KB뱅킹 접속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 신청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 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 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에 관한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소형 · 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써 해당 주택의 처분일에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일반공급 신청 접수 방법

- 공통 : 여수시 거주자를 청약순위별로 접수일정을 구분하여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 1순위자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 1순위자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거주개시일,무주택세대주기간,주택소유여부 등)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노약자, 장애우 등 일반공급 은행창구 청약신청시 구비 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외환은행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 (1·2순위자에 한함) • 청약 신청금 (3순위 신청자에 한함 - 100만원) • 예금인장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보험증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
	제 3 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은 인증된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3순위 청약 신청금

구 분	전 주 택 형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청약 신청금	100만원	창구 청약시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 영업일(2008. 6.13) 이후 평일 09:30 ~ 16:30(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 3순위 청약자(당첨자 포함) • 환불장소 : 청약 접수한 해당은행 본·지점
- 환불시(본인 또는 배우자) 구비사항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의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위임장(접수 장소에 비치)
-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 별 공 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일 반 공 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 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 산정 함 (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 접수 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 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 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 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의 미 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 계약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하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게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일정을 추후 통보함

■ 당첨자(예비당첨자)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2에 의거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의뢰를 실시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미혼, 이혼, 사별, 분리세대 등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지참　• 주민등록 등 · 초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인터넷청약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이용기간	2008. 6. 12. ~ 2008. 6. 19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전화(ARS)	이용방법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세요	
	전화번호	• 1588-9999(서비스 코드 701)	
	이용기간	2008. 6. 12. ~ 2008. 6. 19	• 1369(서비스 코드 5#)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 외환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2008. 6. 12.(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구 분	계 약 일 자 및 시 간	계 약 금 납 부 및 계 약 체 결 장 소
정당당첨자	2008. 6. 17(화) ~ 2008. 6. 19(목) [3일간], 시간 09:30 ~ 16:30	당사 견본주택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 4-2블럭내)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되며 당첨자로 관리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선착순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및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

구 분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3-1블럭	외 환 은 행	611 - 018073 - 124	(주) 신 영
3-2블럭	외 환 은 행	611 - 018073 - 149	(주) 신 영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계약자(당첨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전 당사 견본주택에 당첨여부 및 계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자(당첨자)의 책임임] ※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효력 상실)

■ 계약시 구비 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계약 체결시	공 통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인터넷, 모바일로 청약신청하신 분은 제출 생략)·계약자의 인감도장·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 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세대주, 20세 이상여부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1통,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1통) • 계약금(가능한 여수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특별공급 및 당첨자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 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기타 구비사항은 '일반공급신청시 구비사항' 중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의 경우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 07. 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된 경우
- 1, 2, 3순위 당첨자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제1항】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금융결제원에 5년 이내 재당첨여부 검색하고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포함)는 건설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로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당해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를 준용함.
- 분양대금은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 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단,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받은 중도금은 자동 입금되며 이 경우 회사에서 별도 통지함.)

■ 입주예정일 : 2010년 7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자의 사전 방문 확인제도

- 당사는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도장, 도배, 가구, 타일공사 등에 대해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 할 수 있음.

■ 부대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등.

■ 유의 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 인지내용과 본인 청약내용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 본 아파트는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관계규정 '건설교통부 주관 30415-26905(90.10.15)'에 의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존한 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경비(인지세 등)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 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중도금 납부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자의 책임임.
- 아파트 배치 ·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에 유의하기 바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대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공원, 도로망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 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층·호수는 동 ·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사업주체에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만 설치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이 없음.)
-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등) 분리 수거시설, 정화조 연도 시설과 인접 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됨.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내부 시설물은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임.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단지 내 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준공 후 개별 발코니 확장시에는 건설교통부 지침 ('05.12.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12조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개별 신고하여야 하며, 입주후 불법구조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확장형으로 표현된 견본주택과 달리 공간이 다소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함.
- 발코니 개별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준공 후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 한 당 사업주체에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적으로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평형 및 타입별 특성에 따라 청소용 수전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발코니 개별확장을 할 경우 난방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견본주택내 건립세대, 세대모형, 주민공동시설,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용품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다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및 홈네트워크 예비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분양 후 본인증을 위해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3-1블록 북측 경관녹지, 3-2블록 북측 근린공원 및 동측 청소년문화공원의 조경 및 토목공사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며, 조성계획 변경에 의해 단지 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레벨차이로 인한 옹벽, 산벽, 조경석 등이 형성될 수 있음.
- 또한, 이에 인접한 주동의 저층세대는 레벨차이에 의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319동은 건축법규를 준수하여 배치되었으나,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303, 304, 306, 315, 316동의 일부 세대는 주차램프등과 인접하여, 소음 및 불빛 등의 불편 및 조망이 불리할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내 부대시설과 인접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각동의 일부세대는 각 시설물 이용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공급현장이며, 미확장세대는 발코니의 외부단열 및 바닥난방은 제외됨.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세대내 우,오수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미확장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음. • 본공사시 주동 일부 세대는 기단부 마감 및 상층부 몰딩계획에 따라 창호 크기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동, 상가 및 각종 시설물의 색채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출동경비가 적용되는 아파트이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매월 입주자의 관리비에 합산되어 부과됨.
- 발코니 확장시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계획에 따라 일부 벽체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부지 인근 1블럭 북측 망마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묘지가 다수 산재해 있으며, 3-2블럭 사업지 북쪽에 종교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현재 웅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진행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지조성시행자인 여수시에 문의바람.
- 사업승인조건에 명시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유무가 미정이어 분양가격 산정에서 제외된 바, 향후 여수시에서 부과여부에 따라 추가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음.
- 현 지구단위계획상 3-2블럭 남측 공공업무용지의 최고층수는 10층으로 되어있으며, 향후 공공시설 건축에 따른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입주 시 초등학교는 인근의 시전초등학교로 배치 될 예정이며, 택지지구 내 학교의 개교는 여수교육청에서 향후 계획 수립예정임. • 도시가스 인입을 위하여 부지 내 정압기(옥외 노출구조물)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사업주체에 제기 할 수 없음.

■ 시행자 및 시공자

- 시 행 자 : 주식회사 신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대표이사 정 춘 보) • 시 공 자 : 한라건설 주식회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9, 대표이사 김 홍 두)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 분	3-1블럭		3-2블럭	
	업체명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업체명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건 축 감 리	(주)계림건축사사무소	₩ 1,093,800,000	(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 1,349,590,000
전 기 감 리	(주)명이에프씨	₩ 429,800,000	(주)대화엔지니어링	₩ 422,000,000
정보통신감리	진화엔지니어링(주)&팔마엔지니어링(주)	₩ 66,000,000	진화엔지니어링(주)&팔마엔지니어링(주)	₩ 68,200,000
소 방 감 리	진화엔지니어링(주)	₩ 62,150,000	진화엔지니어링(주)	₩ 141,350,000

■ 연대보증사 : 대한주택보증㈜

구 분	보 증 서 번 호	보 증 금 액	보 증 기 간
3-1 블럭	제 01282008-101-0005900 호	₩ 61,435,60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까지
3-2 블럭	제 01282008-101-0005800 호	₩ 78,787,00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까지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 사항

-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대상 제외사항

1.다음 가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 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 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 중지통보 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 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 선택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 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 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 약관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 하거나 증가된 채무

2.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상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견본주택 위치 : 전남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지구 4-2블럭내

■ 분양안내 : 061-683-700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38조의 2]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 등 주요 항목별로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3-1블럭

(단위 : 천원)

구분	분 야	공 종	금 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9,658,155
	기간이자		787,806
	필요적 경비		596,884
	그 밖의 비용		392,586
	소 계		11,435,431
공사비	토목 (13개공종)	토공사	543,346
		흙막이공사	택지비에 포함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154,857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398,833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1,168,687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894,819
		부대시설공사	89,277
		소 계	3,249,820
	건축 (23개공종)	공통가설공사	2,313,810
		가시설물공사	397,122
		지정 및 기초공사	1,014,977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15,902,622
		용접공사	-
		조적공사	572,260
		미장공사	942,256
		단열공사	-
		방수/방습공사	886,801
		목공사	-
		가구공사	3,063,123
		금속공사	1,525,037
		지붕 및 홈통공사	-
		창호공사	1,882,580
		유리공사	374,148
		타일공사	1,282,465
		돌공사	1,221,165
		도장공사	423,984
		도배공사	354,905
		수장공사	1,908,599
		주방용구공사	262,038
		잡공사	226,207
		소 계	34,554,100
	기계설비 (9개공사)	급수설비공사	306,675
		급탕설비공사	76,669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525,944
		위생기구공사	1,097,331
		승강기기계공사	894,219
		난방설비공사	492,628
		가스설비공사	270,177
		자동제어설비공사	109,169
		특수설비공사	1,757,418
		소 계	5,530,229
	그밖의 공종 (3개공사)	전기공사	2,848,846
		정보통신공사	524,437
		소방설비공사	1,474,938
		소 계	4,848,222
	그밖의 공사비 (2개)	일반관리비	4,294,829
		이 윤	4,308,508
		소 계	8,603,336
	합 계		56,785,707
간접비	설계비		580,000
	감리비		1,794,455
	일반분양시설 경비		4,482,415
	분담금 및 부담금		633,159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6,863,505
	소 계		14,353,535
그 밖의 비용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5,581,327
총공사비 계			88,156,000

• 3-2블럭

(단위 : 천원)

구분	분 야	공 종	금 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12,359,397
	기간이자		1,002,486
	필요적 경비		761,624
	그 밖의 비용		1,050,267
	소 계		15,173,774
공사비	토목 (13개공종)	토공사	814,738
		흙막이공사	택지비에 포함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188,723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488,064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1,279,155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1,134,191
		부대시설공사	107,174
		소 계	4,012,045
	건축 (23개공종)	공통가설공사	3,065,952
		가시설물공사	524,952
		지정 및 기초공사	1,129,372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20,898,036
		용접공사	-
		조적공사	760,189
		미장공사	1,224,081
		단열공사	-
		방수/방습공사	1,157,878
		목공사	-
		가구공사	4,068,057
		금속공사	2,001,780
		지붕 및 홈통공사	-
		창호공사	2,403,224
		유리공사	493,406
		타일공사	1,689,126
		돌공사	1,574,782
		도장공사	537,577
		도배공사	466,869
		수장공사	2,507,390
		주방용구공사	337,055
		잡공사	276,040
		소 계	45,115,764
	기계설비 (9개공사)	급수설비공사	391,667
		급탕설비공사	97,924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645,756
		위생기구공사	1,418,376
		승강기기계공사	1,137,566
		난방설비공사	571,769
		가스설비공사	346,115
		자동제어설비공사	136,184
		특수설비공사	2,292,905
		소 계	7,038,262
	그밖의 공종 (3개공사)	전기공사	3,666,115
		정보통신공사	667,683
		소방설비공사	1,859,111
		소 계	6,192,910
	그밖의 공사비 (2개)	일반관리비	5,604,513
		이 윤	5,582,352
		소 계	11,186,865
	합 계		73,545,846
간접비	설계비		761,000
	감리비		2,165,814
	일반분양시설 경비		5,852,933
	분담금 및 부담금		812,369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8,588,180
	소 계		18,180,296
그 밖의 비용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6,105,085
총공사비 계			113,00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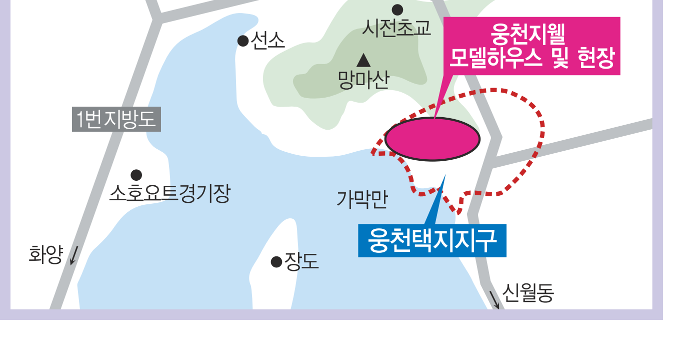

분양문의

061)683·7000

시행 신영

시공 HALLA 한라건설